

식품영업허가를 취득하기까지의 흐름

※보건소의 상담 및 검사는 일본어로 이루어지므로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분과 와주십시오.

【식품영업허가란?】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식품 판매’ 혹은 ‘식품 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 년간)

허가 취득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식품위생 책임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1. 영업종목 결정

어떠한 식품영업을 할지, 어떠한 식품을 판매할지, 어떠한 식품을 제조할지 등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신고가 다르며, 각기 허가업종이 결정됩니다.

허가업종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비, 관리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영업지 관할 보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설비 상담

식품영업시설은 각 업종별로 시설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영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설 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을 지참하시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영업허가 신청

상기 상담이 끝나면 다음 차례는 영업허가 신청입니다. 신청 양식, 서류 작성법, 신청서 제출 시기는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시, 식품위생 책임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 영업시설 전체 평면도
- 사용수가 수돗물이 아닌 경우는 식용으로 적합하다는 검사 성적표

【※식품위생 책임자가 되려면?】

일본 법률에 입각한 일정 자격(영양사, 조리사, 제과 위생사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양성 강습회를 수강할 것).

《수수료》

허가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 영업시설의 검사와 허가

영업시설이 완성되면 보건소의 식품위생감시원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일정은 신청서 제출 시에 상담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지장이 없다면 얼마 뒤 식품영업 허가서가 교부됩니다.

허가의 갱신

영업허가 기간은 5 년간입니다. 허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갱신 신청 또한 신규 허가 신청과 거의 동일한 흐름(신청서 제출, 영업시설 검사 등)으로 진행됩니다.